

입법평가 연구 09-16-□□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call Laws

연구자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Kim, Sung-Cheon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a, Hyun-Sook

2009. 9. 30.

국문 요약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리콜법제가 복잡하여 수범자인 기업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리콜법제는 소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표적인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리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수범자 실태분석,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리콜과 관련한 규제가 현시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규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콜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리콜법제의 계속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위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규범간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둘째, 리콜법제에 관한 수범자 실태조사를 살펴본다. 셋째, 비교법적 분석으로 EU, 미국, 일본 등의 소비자안전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향후 입법자가 향후 리콜에 관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입법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키워드 :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리콜, 리콜법제, 소비자안전,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Abstrac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call Laws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the recall laws are so complicated that the customers (corporations and consumers) go through inconveniences. The typical Laws on Recall ar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UTOMOBILE MANAGEMENT ACT, FOOD SANITATION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and so on. Generally,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vided into prospec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in terms of stage of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call laws is a retrospective evaluation. A retrospective evaluation is to judge whether the objects of laws intended are accomplished, whether the customers of laws admit and tolerate raised burden, and whether the customers of laws observe the regulations enough.

This report, in terms of retrospective evaluation, intended to present a suitable alternative for the present with the normative analysis, the survey of customers' view,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on the recall laws. That is, this report intends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recall laws with the investigation of some issues : whether the recall laws as a norm for recall systems keep their objects at the present, how the customers adapt themselves to the recall laws, and so forth. Verifying the effect of the present laws, and the clarifying the grounds for going on with the present laws or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s laws, we intends to present enough backgrounds so that they may assist what is called a legislator to truly discharge the duty of improvement in laws.

First, as a normative analysis, we research into the norm's history and systemic validity among norms. Second, we look about the survey of customers' views on recall laws. Third, we analyze the tendency of comparative laws on consumer safety in EU, US, Japan.

Finally, The object of this report proposes alternatives with performing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in the recall laws. We hope that these alternatives will be utilized as the useful legislative materials to enacting good recall laws in the future.

※ Key Words : Evaluation of Legislation, Prospective Evaluation,
Recall, Recalls, Consumer Safety,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ACT ON CONSUMERS



입법평가 요약서

입법평가 요약서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목 차】

- | | |
|---------------------|----------------------------|
| I. 입법평가의 목적 | V. 대안제시 |
| II. 입법평가의 방법 | 1. 대안 1 :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 |
| III. 입법평가의 대상 | 2. 대안 2 :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 |
| IV. 리콜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 | 3. 대안 3 : 품목별 통합법 제정
방안 |
| | 4. 대안 비교와 권고 |

I. 입법평가의 목적

제품의 리콜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에게도 이미 전지구적 소비자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과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리콜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마다 일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게 될 경제적 부담, 시간적 손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리콜은 바로 이러한 문

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위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리콜법제는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식품, 자동차,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로 관계 법령에서도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리콜법제가 다양하고 집행주체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리콜을 수행하려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수범자(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품목별 리콜법제상 리콜의 개념, 요건, 처리절차 등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리콜제도의 취지에 못미치고 있어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등 비효율성이 존재하여 현행 리콜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향후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콜법제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II. 입법평가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법제의 성과를 제시해주고, 현행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체계의 대안과 근거를 제시한다.

리콜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규범론적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비교법 조사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규범론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수범자 실태조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리콜관련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먼저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리콜법제의 체계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규범론적 분석은 입법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론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과거와 현재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수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또한 리콜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리콜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간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도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서술한다.

Ⅲ. 입법평가의 대상

리콜법제의 입법평가에 포함되는 법령은 품목별로 일반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으로 리콜전단계, 리콜단계, 리콜후 단계 등에서의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법제간의 체계성 등 사후적 입법평가를 연구한다.

IV. 리콜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품목별로 구분되어 규제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리콜법제는 품목별로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

소비재와 식품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어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리콜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토대로 리콜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현행 리콜법제의 입법체계상의 특징은 개별입법주의와 리콜규제의 다양성이다.

현행 리콜입법체계의 문제점은 이런 특징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규제체계의 불균형에 있다.

첫째,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별 개별입법주의로서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리콜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등에서 품목별 위해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리콜규정을 신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는 동일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리콜규제를 두고 있다. 리콜에 관한 개별입법주의는 리콜에 관한 수범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리콜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콜법제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품목별로 달리 규율하는 법률을 찾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원리나 기준이

다를 경우 규범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보고의무와 리콜절차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별법을 우선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수범자(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리콜법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품목별로 개별법령에서 리콜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입법체계에서는 리콜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자동차리콜법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한 리콜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리콜의 대상과 리콜요건이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요건은 배출가스가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자동차관리법의 리콜요건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식품리콜법제는 규제내용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산품리콜법제 모두는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규제정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리콜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리콜규제는 리콜단계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리콜명령 즉 강제적 리콜에 대한 치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리콜규제의 중심이 자발적 리콜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아직도 자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도 있다. 소비자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 리콜전 단계의 결함정보보고의무, 강제적 리콜 전 단계의 리콜권고

등을 규정하여 리콜규제의 중심이 강제적 리콜에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에 전환되고 있지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기존의 리콜법제는 아직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V. 대안제시

리콜법제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했다. 먼저, 법령연혁조사, 체계적합성 분석 등 규범론적 분석을 했고, 기존의 수범자 실태조사를 통해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을 조명하였으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리콜관련 소비자안전법제의 동향을 파악한 후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을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대안 1 :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

첫 번째 대안은 리콜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콜에 관한 기본법에서 기본개념의 정의, 리콜의 기본이념, 리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리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결함정보 보고의무, 안전성조사,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리콜권고, 리콜정보 망구축 등 리콜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리콜법제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소관품목에 따라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현행 리콜법제가 모든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신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리콜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강제적 리콜을 명령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적용법규의 내용이 달라 수범자의 입장에서도 리콜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리콜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방식은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가칭)리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리콜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통일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고 소관부처도 강제적 리콜절차를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혼잡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기본법의 입법대안을 채택할 경우 개별법의 리콜규제에 대한 공백은 없으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리콜법제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은 분야가 생겨날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리콜에 한정하여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리콜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및 부처별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자발적 리콜이나 강제적 리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이나 규제주체에 대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리콜에 관한 기본법의 체계를 취하면서도 품목별 개별법에서 리콜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리콜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안 2 :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

두 번째 대안은 리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을 리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 다시 말해 결함제품의 피해자인 소비자나 리콜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에 따라 리콜법제와 리콜절차 등이 달라 실효성 있는 리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리콜대상을 수범자인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리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리콜을 유도한다.

리콜일반법의 입법방식은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의 형식을 참조하여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리콜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관련자의 책무 이외에도 각종 절차 등에 관한 실체적 사항 및 그 실현을 위한 절차적 사항까지 자세하게 규율한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규정을 참조하여 리콜일반법에 리콜절차를 규정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생활과 관련한 물품과 용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집행주체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장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에서 리콜 관련 규정이 제품의 일반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리콜 일반법의 입법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수범자의 관점에서 리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일본의 소비자청 등과 같이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리콜규제권한을 갖도록 할 것인지 기존의 소관행정부처가 리콜규제권한을 소관품목에 대해서는 갖도록 할 것인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3. 대안 3 : 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

세 번째 대안은 리콜대상의 속성에 따라 크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영역별로 구분하여 품목별·부처별로 통합하여 리콜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품목에 대해 개별 리콜법제별로 리콜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달라 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품목영역별로

하나의 법률에서 리콜규정을 두고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면 기업은 통일적으로 리콜을 이행할 수 있다.

입법방식은 품목영역별로 1개 법률에서 리콜의 일반규정을 두고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방식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리콜의 경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별개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관리법에서 통합하여 자동차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준용한다.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준용한다.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서 준용한다. 한편 소비재에 관한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규정을 독립시켜 (가칭)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생활과 관련한 물품과 용역에 관한 리콜규정을 두어 소비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내포하도록 한다.

통합형 입법대안을 채택할 경우 품목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품목에 따라 규제주체가 다른 자동차, 식품 등의 경우에는 통합법률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대안 비교와 권고

입법평가의 기준은 다양한 관점에 접근되고 있지만, 리콜법제의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 비용, 적용적합성, 친숙성 등의 기준을 활용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리콜에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줄일 있는가, 비용은 리콜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적 수요를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적용적합성은 리콜법제의 집행

기구의 관할이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친숙성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이나 적용될 법조항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각각 초점을 둔다.

대안의 공통적 전제는 현행 리콜법제가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품목은 물론 소관부처별로도 여러 개의 법률에서 리콜요건, 리콜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 더 나아가 규제주체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의 3가지 대안은 이런 리콜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3가지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안1(리콜 기본법 제정방안)의 경우 기본법을 토대로 많은 개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입법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야가 생겨날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효율성). 기본법을 제정하는 외에도 개별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점에서 그에 소요되는 입법비용이 크다(비용). 단일의 리콜집행기구를 둘 경우 리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증대하나, 개별집행기구를 인정할 경우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어렵다(적응적합성). 기본법 이외에 품목별 통합법이 존재할 경우 수범자로서는 리콜기본법에 대한 인식도나 적용조항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게 된다(친숙성).

대안2(리콜 일반법 제정방안)의 경우 리콜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한 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들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으나, 기본법과 동일하게 일반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정비용이 크다(비용). 모든 리콜을 통할하는 하나의 집행기구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나, 규제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친숙성).

대안3(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의 경우 리콜대상의 속성에 따라 크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영역별로 구분하여 품목별·부처별로 통합하여 리콜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품목별로는 리콜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므로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품목별로는 한 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부처별로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다(비용). 품목별로 리콜을 통할하는 하나의 집행기구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 품목별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친숙성).

위의 3가지 대안중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리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대안 3(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이다. 대안 3은 소비자안전정책의 관점에서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입법방식이다.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통합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EU 등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용품인 소비생활용품의 리콜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제정하여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의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2001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2001/95/EC)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규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미국, EU 등의 국가와 같이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기본법상 리콜규정을 편입하여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의 틀을 갖춘다면 리콜규제의 통일성은 물론 자발적 리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27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27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	29
제 3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구성	30
제 2 장 리콜법제의 내용과 입법체계	33
제 1 절 리콜의 의의	33
1. 리콜의 개념	33
2. 리콜의 종류	34
3. 리콜의 방법	36
제 2 절 리콜법제의 내용	37
1. 소비재리콜법제	37
2. 자동차리콜법제	43
3. 식품리콜법제	52
4. 의약품리콜법제	66
5. 공산품리콜법제	69
제 3 절 리콜법제의 입법체계	81
1. 리콜입법체계의 특징	81

2. 리콜입법체계의 문제점	88
제 3 장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91
제 1 절 규범론적 분석	91
1. 법령연혁 조사	91
2. 체계적합성 분석	101
제 2 절 실태조사	107
1. 실태조사의 의의	107
2. 수범자의 실태조사	107
제 3 절 비교법적 분석	113
1. E U	114
2. 미 국	122
3. 일 본	131
4. 시사점	140
제 4 장 대안과 권고	143
제 1 절 대안제시	143
1. 대안 1 :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	143
2. 대안 2 :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	144
3. 대안 3 : 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	145
제 2 절 대안 비교와 권고	147
제 5 장 결 론	153

참 고 문 헌 155

【부 록】

I. 리콜 관련 국내법규 161

- 1. 소비자기본법 161
- 2. 대기환경보전법 168
- 3. 자동차관리법 174
- 4. 식품안전기본법 181
- 5. 식품위생법 182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94
- 7. 축산물가공처리법 195
- 8. 농산물품질관리법 199
- 9. 수산물품질관리법 205
- 10. 약사법 215
- 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22
-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29
-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35
-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복잡다양한 제품이 양산되면서 소비생활은 비약적으로 풍요롭게 된 반면에 제품의 계획·설계·생산·유통단계 등에서 여러 가지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문제에 대하여 피해구제 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차원에서 취급하거나 품목별 개별법규에 각종 안전규격·기준을 마련해놓고 이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는 위해 발생 이후에 소비자에 대한 사후적 해결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각종 안전기준 중심의 규제장치는 기준의 준수 의무와 기준 위반시 사후적 행정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결함제품으로 인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의 위해사고에 대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또는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위해의 문제를 사전예방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에 대한 제조자, 유통업자 등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제도로서 1960년대부터 리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업도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제품의 리콜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에게도 이미 전지구적 소비자문제로 인식되었다. 만일 리콜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마다 일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게 될 경제적 부담, 시간적 손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리콜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위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리콜법제는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식품, 자동차,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로 관계 법령에서도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리콜법제가 다양하고 집행주체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리콜을 수행하려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수범자(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품목별 리콜법제상 리콜의 개념, 요건, 처리절차 등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리콜제도의 취지에 못미치고 있어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등 비효율성이 존재하여 현행 리콜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EU, 일본, 미국 등에서도 정책적 과제로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콜법제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2001년 일반제품안전지침을 개정하여 리콜제도를 강화하였고,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회원국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리콜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향후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콜법제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법제의 성과를 제시해주고, 현행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체계의 대안과 근거를 제시한다.

리콜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규범론적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규범론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수범자 실태조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먼저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리콜법제의 체계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규범론적 분석은 입법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론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과거와 현재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수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또한 리콜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리콜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간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도 규범론적 분석

의 일환으로 서술한다.

제 3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구성

리콜법제의 입법평가에 포함되는 법령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별로 일반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으로 리콜전단계, 리콜단계, 리콜후단계 등에서의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법제간의 체계성 등 사후적 입법평가를 연구한다.

[표1-1] 리콜법제의 현황

품 목		근 거 법 령
소비재(물품과 용역)		소비자기본법
자동차	자동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식품	식 품	식품안전기본법
	식 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품 목		근 거 법 령
의약품		약사법
공산품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용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러한 입법평가의 목적, 방법, 범위 등에 따른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우선 리콜의 개념, 유형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품목별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제 14개의 내용을 리콜전 단계, 리콜 단계, 리콜후 단계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리콜법제를 입법체계의 관점에서 현행 리콜법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장은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내용으로 우선 규범론적 분석에 관한 것으로 법령연혁 조사와 체계적합성 등을 분석한 뒤, 기존의 수범자 실태조사와 비교법적 분석을 살펴본다.

제4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리콜법제의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으로는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 품목별 리콜통합법 제정방안 등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대안과 더불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리콜법제의 통일화나 세계화에 따른 리콜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제 2 장 리콜법제의 내용과 입법체제

제 1 절 리콜의 의의

1. 리콜의 개념

본래 리콜(Recall)이란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제도에서 기원했으나, 오늘날에는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결함제품을 시장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리콜’은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우리나라 리콜법제 어디에도 리콜이라는 법령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결함물품 시정조치’와 같은 법령상 용어 대신에 ‘리콜(rec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결함물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라는 문언이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함물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결함물품 시정조치)’로 축약할 수 있는데 법조문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사실상 ‘리콜’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콜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또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 또는 발생 초기 단계에 해당 결함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

를 취하는, 사전예방차원의 행정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리콜과 구별되는 제도로는 사후적 안전규제제도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 있다. 제조물책임은 결함제품과 관련하여 사고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면서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에 드는 추가적 비용을 제품안전향상에 투자토록 하는 안전성제고를 위한 규제수단이다. 제조물책임은 결함제품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법원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안전규제이다. 제품결함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전에 리콜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다.¹⁾

2. 리콜의 종류

리콜은 리콜시점과 자발성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1) 리콜시점에 따른 리콜의 종류

1) 사전적 리콜

사전적 리콜이란 결함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리콜을 말한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인 제조업

1)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과 결함제품 리콜제도를 서로 결합하여 제품안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후 기업의 자발적 결함 시정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확실시 되던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자동차관련법에 따른 리콜건수가 보다 증가하였으며 동법의 시행을 앞둔 2001년의 경우도 리콜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들이 제조물책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결함제품의 리콜과 소비자안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것으로서 제조물책임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에 신속한 리콜의사 결정 등 대응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나 유통업자의 수중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에 행해지는 리콜보다는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2) 사후적 리콜

사후적 리콜이란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행하는 리콜을 말한다.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자발성 여부에 따른 리콜의 종류

1) 자발적 리콜

자발적 리콜(Voluntary Recall)이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소비자기본법 또는 품목별 리콜법령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자진수거, 파기 등 리콜절차를 이행하는 리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자진시정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2) 강제적 리콜

강제적 리콜(Mandatory/Compulsory Recall)이란 사업자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기본법 또는 품목별 리콜법령에 따라 제조, 판매금지 및 결함사실공표 등의 리콜절차를 이행하는 리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규정된 정부의 ‘시정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리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당해 물품 등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금지를 명하거나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3. 리콜의 방법

리콜의 방법은 넓게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금지, 제품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의미하나, 좁게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을 의미한다.

첫째, 수리란 결함제품의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등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고 제품을 지정 수리처로 가져오는 것이 용이한 경우이다.

둘째, 교환이란 결함이 없는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해당 제품이 단종이 되는 등 불가능할 경우 가치 측면에서 동등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셋째, 환급이란 제품의 구입가를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구입가 환급이다.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되며 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넷째, 파기란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 2 절 리콜법제의 내용

1. 소비재리콜법제

소비재리콜법제는 소비재를 리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이다. 소비재란 법령용어가 아니지만,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고,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참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별리콜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²⁾에 따른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안전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므로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 법규에 리콜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제품의 리콜은 개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리콜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리콜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결함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리콜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에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등 소비자기본법의 관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리콜조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1) 리콜전 단계

소비자기본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사업자의 결함정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동법 제47조). 결함정보보고제도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

2)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사 물품의 결함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업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물품의 위해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리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물품 등의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는 반면, 결함정보를 보고하고 스스로 리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부에서 리콜 명령 및 권고 등의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 1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물품 등의 제조단계에서 결함있는 물품 등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후 물품 등의 결함을 인식하였을 경우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결함정보보고의무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이러한 결함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써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물품 등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³⁾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4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요한 결함의 범위는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명 이상의 식중독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결함 또는 물품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이다(동법 제4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사업자가 이러한 결함정보를 지득한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체없이 구술로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만, 구술로 보고한 경우 24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또한 유통업자가 중대한 사실을 알기 전에 제조업자 등이 결함사실을 먼저 보고한 경우 유통업자의 보고의 무는 면제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사업자로부터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리콜단계

소비자기본법은 리콜의 종류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외에 리콜권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동법 시행령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자발적 리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저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시정계획서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리콜권고

사업자가 물품 등의 위해성을 인식하고도 상기의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시정권고서에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행의 내용,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7일 또는 시정권고에서 인정되는 통지기한내에 사업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물품 등의 명칭,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시정권고를 수락한 사업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락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락 거부 또는 수락여부에 대한 미통지 후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이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3) 강제적 리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과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시정명령을 발함에 있어 위해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만일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위해를 제거하는데 미흡한 경우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한 사업자는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기재한 시정조치결과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3) 리콜후 단계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은 물론 강제적 리콜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위해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2항). 다만, 사업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만일,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거·파기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이와 같이 사업자의 위해성 있는 물품 등을 수거·파기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2. 자동차리콜법제

자동차리콜법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한 리콜규정을 두고 있다. 리콜대상은 자동차이지만, 적용범위가 차이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대상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⁴⁾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고(동법 제2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4)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3 참조.

(1) 대기환경보전법

1) 리콜전 단계

대기환경보전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결함확인검사절차와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결함확인검사절차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여기서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가스)에 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말하는데, 휘발유·알콜·가스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②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의무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첫째,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와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 때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요구건수와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내용,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둘째,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와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때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의무적 결함시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산정근거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2) 리콜단계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부품에 대한 리콜규정을 두고 있다.

① 자동차에 대한 리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적 리콜과 자발적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3항). 그러나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리콜절차는 다음과 같다.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 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 계획서에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② 자동차부품에 대한 리콜

대기환경보전법은 부품의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

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1항).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가 50건 이상인 경우와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2조 제2항 단서).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즉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해당)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2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1년,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5년이며,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이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3년이다(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3) 리콜후 단계

대기환경보전법은 리콜결과에 대한 평가와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6항).

둘째,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2) 자동차관리법

1) 리콜전 단계

자동차관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결함공개의무와 제작결함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

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제1항).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모델연도,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2) 리콜단계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 등의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시정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

작자 등이 제작결함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정계획과 진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시정계획서는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시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 대수, 시정계획의 내용,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등이다.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때까지 매분기 마다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시정조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 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 등이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결함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정계획과 진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시정계획서는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시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작결함이 있

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시정계획의 내용,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광고문, 보상계획(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이다.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때까지 매분기 마다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시정조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3항).

한편, 리콜의 내용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자체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동법 제31조의2).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일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대상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이다.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 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나 부품제작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 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 등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

3) 리콜후 단계

자동차관리법은 리콜후 단계에서 필요한 제작결함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결함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

3. 식품리콜법제

식품리콜법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식품리콜에 관한 기본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적용대상은 식품으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로서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법령 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식품 등의 안

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이에 식품안전기본법은 개별법률과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3조).

(1) 식품안전기본법

1) 리콜전 단계

식품안전기본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위해성 평가와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그러나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둘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등,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2) 리콜단계

식품안전기본법은 위해식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은 물론 강제적 리콜에 준하는 긴급대응체계와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는 생산·판매 등을 한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 등으로 정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이 때 식품 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와 텔레비전 방송,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공개하는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회수 식품 등의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회수 계획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 기간,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회수계획공개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둘째,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 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

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당 식품 등의 종류,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생산·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 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이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셋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 때 사업자는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동조 제2항).

3) 리콜후 단계

식품안전기본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식품위생법⁵⁾

1) 리콜전 단계

식품위생법은 리콜전 단계에 영업자 등의 이물보고 및 통보의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해평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식품 등의 이물보고 의무 및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즉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

5) 식품위생법상 리콜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이다(동법 제 2조). 즉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하고,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며, “기구”란 다음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한편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6조). 즉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해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리콜단계

식품위생법은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다.⁶⁾

첫째,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외에도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와 그 밖에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해당 식품 등의 종류,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제조·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 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동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1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공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45조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개수명령 등」(동법 제74조), 「품목제조정지 등」(동법 제7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리콜후 단계

식품위생법상 리콜후 단계에 규정은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리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리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⁷⁾. 예를 들

7)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면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폐기처분 등,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 등이 있다.

(4) 축산물가공처리법⁸⁾

1) 리콜전 단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리콜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리콜단계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발적 리콜(축산물의 자발적 회수)과 강제적 리콜(폐기 또는 회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의2 제1항).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축산물의 명칭,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기간 및 장소, 회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물식품부장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8)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리콜대상인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그리고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이 경우 그 결과에는 축산물의 명칭,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허가관청은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2항).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동법 제27조의2 제1항).

3) 리콜후 단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농산물품질관리법⁹⁾

1) 리콜전 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안전성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와 유통·판매 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의2).

2) 리콜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을 없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강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효성있는 농산물리콜을 위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그 밖에

9)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리콜대상인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 및 축산물과 그 밖에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둘째,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7조의5 제1항). 이 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항).

3) 리콜후 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6) 수산물품질관리법¹⁰⁾

1) 리콜전 단계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수산물 등에 관한 검사의무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

10)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리콜대상인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용수)·어장·자재 등과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제1항).

2) 리콜단계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을 없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강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효성있는 수산물리콜을 위해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법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허용기준

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이런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셋째,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중 하나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이고(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4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를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3) 리콜후 단계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리콜후 단계에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 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수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 의약품리콜법제

의약품리콜법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의 리콜대상은 의약품¹¹⁾과 의약외품¹²⁾이다(동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

(1) 리콜전 단계

약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신약 등의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11)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약전(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12)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2) 리콜단계

약사법은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준¹³⁾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

13) 1. 1등급 위해성

-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2등급 위해성

-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3. 3등급 위해성

-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회수의무자는 1,2,3 등급위해성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 등급이 제2항 제1호에 따른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2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자 등의 기록,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회수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71조 제2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2항).

(3) 리콜후 단계

약사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공산품리콜법제

공산품리콜법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¹⁴⁾

1) 리콜전 단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 외의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신체의 상해 정

1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리콜대상인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공산품은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된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2) 리콜단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은 없고, 리콜권고와 강제적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와 어린이용 공산품(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추정물질을 포함)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공산품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의 확산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공산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둘째,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일정한 사유¹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일정한 사유¹⁶⁾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한 사유¹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일정한 사유¹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
- 15)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6)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7)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18)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그러나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한편 시·도지사는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이나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6항).

3) 리콜후 단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리콜후 단계에서 공산품안전정보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해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공산품안전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2항).

-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¹⁹⁾

1) 리콜전 단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안전성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 중에서 일정한 사유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성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체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동법 제15조의2).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해당 전기용품을 수입·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해당 전기용품으로 인한 중

1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리콜품목은 전기용품이다.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전기용품은 규제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동법 동조 제3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동법 동조 제4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동조 제5호).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 확산의 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기용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대여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2) 리콜단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은 없고, 리콜권고와 강제적 리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5조의3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제조업자명, 해당 전기용품의 로트 번호(Lot Number)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시정권고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이행기간,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러나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시정권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둘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개선·과기·수거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1항).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그러나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동법 동조 제4항).

한편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위해성 공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6항).

3) 리콜후 단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²⁰⁾

1) 리콜전 단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용기검사와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 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2) 리콜단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강제적 리콜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지식경제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 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리콜대상인 용품(容器)이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填)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호).

(동법 동조 제1항). 그러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와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용기 등의 수집방법, 회수 등의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는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동조 제4항). 구체적으로 회수·교환 및 환불명령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및 제품번호, 제조 또는 수입일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 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 등의 결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과 제3항).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용기의 회수 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및 제품번호, 회수 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방법, 회수 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그 밖에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3) 리콜후 단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리콜후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²¹⁾

1) 리콜전 단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가스용품검사 및 관련 사업자의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둘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이 때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등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동법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리콜대상은 가스용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가스용품제조사업이나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스용품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8호), 가스용품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9호). 이에 가스용품은 액화석유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이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2) 리콜단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동조 제2항). 구체적으로 우선 회수·교환 및 환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제품명과 제조번호, 제조 또는 수입일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그리고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 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 등의 결과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과 제3항).

둘째,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가스용품의 회수 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과 제조번호, 회수 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방법, 회수 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그 밖에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3) 리콜후 단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리콜 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 3 절 리콜법제의 입법체계

1. 리콜입법체계의 특징

(1) 개별입법주의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별로 구분되어 규제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리콜법제는 품목별로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

소비재와 식품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어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리콜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토대로 리콜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현행 리콜법제의 입법체계의 특징은 개별입법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표2-1] 품목별 리콜법제의 주요 내용

품 목	법 률	주 요 내 용
소비재 (물품과 용역)	소비자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정보보고의무,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리콜권고 ○ 위해방지조치

제 2 장 리콜법제의 내용과 입법체계

품 목		법 른	주 요 내 용
자 동 차	자동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확인검사절차,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보고의무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결함공개의무, 제작결함조사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 제작결함정보수집
식 품	식 품	식품안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평가와 검사명령 ○ 자발적 리콜, 긴급대응체계, 판매금지
	식 품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보고 및 통보의무, 위해평가의무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 강제적 리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무, 안전성조사 ○ 강제적 리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의약품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공 산 품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 리콜권고, 강제적 리콜 ○ 공산품안전정보망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 리콜권고, 강제적 리콜

품 목	법 률	주 요 내 용
고압가스 용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용기검사, 사고통보의무 ○ 강제적 리콜
액화석유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가스용품검사, 사고통보의무 ○ 강제적 리콜

(2) 리콜규제의 다양성

1) 리콜규제의 개념과 속성

리콜규제는 정부규제²²⁾정책의 유형에 있어 사회적 규제²³⁾로서의 소

22) 일반적인 의미의 규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규제는 정부(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이다. OECD에 의하면 규제란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기업·국민·정부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질서 내지 기타 규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란 정부조직의 하나인 규제기관이 달성해야 할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민간경제주체인 기업, 개인, 조직의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금지, 지시하거나 지도·보호·지원·조장하는 행정작용이며,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23) 정부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체질을 보전·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특정 산업이나 공익사업에서 결정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초점을 둔 경제적 규제, 그리고 환경보호, 생산물의 안전성, 근로자의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제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의미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서비스 포함)의 가격(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 경제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보호를 그 목적을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독과점 산업이 횡포를 방지하고 생산자의 부당이득 방지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보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생

비자보호규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산자보호는 과당경쟁의 방지, 유치산업의 육성, 불공정한 기업 간의 경쟁의 방지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진입규제는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말한다. 또한 가격규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확보하여 이를 발판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시키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변형된 규제의 유형으로서 자율규제가 있다. 이는 정부규제의 규제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 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규제기관에 있어서는 경제산업 구조의 복잡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인해 규제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가 한계가 있거나,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선호하며 업계에 있어서는 정부규제의 선점전략과 업계의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기존업체의 반경쟁적 전략에 따라 시행된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기업활동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의 행동을 규제해 나갈 수 있지만 이는 반경쟁적 효과 등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 또는 형태를 통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사회적 규제는 시장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보전 및 안전, 환경보호, 자연자원의 보존,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정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유기업주의 체제에 대한 철학적·이념적·도덕적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결과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보다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띤다. 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의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의 보호 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규제에는 소비자 보호규제, 환경규제,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규제는 독과점 및 기업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물질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안전성과 질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부당행위와 기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규제는 외부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시도로서 수행되는 환경의 질에 대한 규제로서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는 모든 근로자를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행정학회, “각종 표시·광고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5, 9쪽 이하 참조.

안정성확보를 위해 결함제품 등에 대한 수거 등을 이행하므로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의미한다.

리콜규제는 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기업가적 정치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규제영역이다.²⁴⁾ 즉 동질적인 집단인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리콜규제라는 비용을 집중시키면서 일반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콜규제대상에 포함된 사업과 리콜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업간에 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을 예상하고 행동함 포함된 마찰이 발생하는 이익집단정치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리콜에 대한 규제방법

① 규제법규에 따른 분류

리콜규제는 규제법규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일반법규에 의한 규제와 개별법규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24) 정책이란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한 혜택을 받는 자원배분의 지침이다. 이는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관점인바, 정부의 규제정책 역시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영역이다. Wilson은 규제정책의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4가지 정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정치상황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수집단은 빠르게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상대편은 정치적 조직화가 미약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직업면허 등이다. 둘째, 기업가적 정치상황은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규제, 산업안전규제, 위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등 사회적 규제가 해당된다. 셋째, 이익집단정치의 상황은 정부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그 각각의 크기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의 확보를 위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 및 제도, 한약분쟁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중적 정치의 상황은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1쪽 이하 참조.

일반법규에 의한 규제란 리콜에 대한 규제법규가 모든 사업자·물품 및 용역에 전반적·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규제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개별법규에 의한 규제란 리콜법규가 특정사업자·물품 및 용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이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을 들 수 있다.

② 규제의 주체에 의한 분류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는 크게 법에 의한 타율규제의 형식을 지닌 정부규제(타율규제)와 기업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율규제 및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규제(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규제, 타율규제 또는 입법규제란 리콜, 특히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서 규제함을 말한다. 이는 결함있는 제품은 소비생활을 어지럽히고,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사회불신을 조장하며,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다는 이유에 기인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규로서 리콜을 규제한다. 이러한 타율규제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자율규제란 정부나 소비자 또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 기업자체에 의한 기업행위와 영업활동에 대한 자발적 통제를 말한다. 이는 결함제품에 제기되는 비판을 자체적으로 수렴·해결하여 법에 의한 정부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시키려는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노력으로, 자발적으로 리콜에 대한 자체기준과 윤리규정을 개발하고 리콜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하고, 결함제품에 대한 피해와 불만을 처리를 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규제·사회적 규제란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강제도 미흡할 경우에 소비자 개인이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권리행사차원에서 직접 리콜규제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결함제품을 찾아내거나 소비자들의 고발이나 진정이 있으며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매운동 등의 여론화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고발, 법원에의 제소, 법제화의 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것을 말한다.

③ 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규제의 시점에 따라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규제는 리콜에 대한 규제의 효과가 리콜 실행전에 미치는 것으로서, 리콜내용의 부당성을 심의하여 사전에 제거토록 하거나 사업자에게 표시의무 또는 특정 주장에 대한 사전 실증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후규제는 이미 실행되었거나 실행되고 있는 리콜에 대해 행정당국이나 소비자단체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의 신고에 의하여 리콜의 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자에 대해 리콜의 수정 또는 중지를 권고하거나 시정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방법이다.

④ 규제단계에 따른 분류

리콜규제는 리콜전 단계의 규제, 리콜단계의 규제, 리콜후 단계의 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리콜전 단계에서는 결함정보보고의무, 사고통보의무, 안전성조사 등 제품결함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보고의무는 리콜전 단계에서 결함정보를 직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리콜전 단계에서 리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이용되고 있다.

리콜단계에서는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에서는 리콜공표나 계획서제출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강제적 리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리콜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리콜후 단계에서는 리콜결과정보를 수집하거나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위해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⑤ 제재내용에 따른 분류

리콜법제에서 리콜과 관련한 규제내용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규정이 있다. 행정제재로는 시정조치명령 즉 리콜명령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금지, 영업정지, 제조정지 등의 행정명령이 있으며, 기타 과태료와 과징금에 관한 규정도 있다.

2. 리콜입법체계의 문제점

(1) 수범자의 혼란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별 개별입법주의로서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리콜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등에서 품목별 위해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리콜규정을 신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는 동일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리콜규제를 두고 있다.

리콜에 관한 개별입법주의는 리콜에 관한 수범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리콜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

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콜법제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품목별로 달리 규율하는 법률을 찾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원리나 기준이 다를 경우 규범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보고의무와 리콜절차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수범자(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리콜법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체계의 불균형

품목별로 개별법령에서 리콜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입법체계에서는 리콜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자동차리콜법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한 리콜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리콜의 대상과 리콜요건이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요건은 배출가스가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자동차관리법의 리콜요건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식품리콜법제는 규제내용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산품리콜법제 모두는 자발적 리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리콜전 단계에서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규제정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분

하여 리콜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리콜규제는 리콜단계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리콜명령 즉 강제적 리콜에 대한 치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리콜규제의 중심이 자발적 리콜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아직도 자발적 리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도 있다. 소비자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 리콜전 단계의 결함정보보고의무, 강제적 리콜 전 단계의 리콜권고 등을 규정하여 리콜규제의 중심이 강제적 리콜에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에 전환되고 있지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기존의 리콜법제는 아직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제 3 장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법평가의 방법은 규범론적 분석, 실태조사, 비교법적 분석 등이다. 우선 대상법령인 리콜법제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으로서의 법령연혁조사 및 법령간의 체계적합성 분석 등을 행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로는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실태조사의 결과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EU, 미국, 일본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소비자안전법제의 동향을 파악한다.

제 1 절 규범론적 분석

이하에서는 리콜법제에 대하여 법령연혁조사를 기초로 하는 규범적 분석 및 법령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시도한다.

1. 법령연혁 조사

(1) 법령연혁조사의 의의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입법체계는 품목별로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개별리콜법제가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폐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리콜법제의 규범론적 평가를 위한 첫걸음으로 리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연혁을 파악하므로 리콜법제의 입법체계는

물론 품목별 리콜법제내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신인 공산품품질관리법(1973년)을 시작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983년), 대기환경보전법(1990년), 자동차관리법(1991년), 식품위생법(1995년),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기본법(1995년), 축산물가공처리법(1997년),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년), 약사법(2006년), 식품안전기본법(2008년) 등의 순서이다.

(2) 리콜법제의 연혁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리콜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법률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신인 공산품품질관리법이다. 1973년 3월 12일 개정된 공산품품질관리법에는 검사불합격상품에 대한 파기 및 수거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동법 제6조 제3항25).

1993년 12월 27일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품질검사제를 안전검사제로 변경하면서 리콜규정도 개정했다(동법 제19조26).

25) 제6조 (품질검사) ①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수입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상품(이하 “검사지정상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합격하지 아니한 상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은 상품은 예외로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26) 제19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판매금지 등)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진열·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0년 12월 29일 제명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동법 제15조).

2005년 5월 26일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산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개정했다(동법 제15조).

2005년 12월 23일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변경하면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권고 등(동법 제29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동법 제31조)을 자세히 규정했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년 1월 4일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23조27).

1999년 9월 7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27) 제23조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당해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동법 제8조).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산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개정했다(동법 제8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동법 제19조).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의 중지 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신설했다(동법 제15조의3).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83년 12월 31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종류를 규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기에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동법 제18조28).

28)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999년 2월 8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용기 등 유통중인 가스기기를 수집·검사하여 그것의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동법 제18조 제2항).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사고통보의무를 신설했다(동법 제26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983년 12월 31일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동법 제22조 제2항²⁹⁾).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동법 제22조 제2항).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사고통보의무를 신설했다(동법 제39조).

5) 대기환경보전법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규정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9)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두었다(동법 제34조).

1992년 12월 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자동차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자진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4조 제4항부터 6항까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했다(동법 제34조의3 신설). 즉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6) 자동차관리법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리콜규정이 추가되었다(동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³⁰⁾).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내용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이라는 표제아래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동법 제31조).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30) 제30조(자동차의 형식승인 등)

④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제작결함 시정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1조 및 제33조).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부품제작자의 결함시정에 대해 보완했고(동법 제31조), 시정자동차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

7) 식품위생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리콜제도의 실시 근거로서 식품 등의 자진회수 노력의무와 리콜명령 및 공표제도를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³¹⁾, 제56조 제3항 및 제56조의2).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 의무화를 규정했다(동법 제31조의2 제1항³²⁾).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등의 이물 보고의무를 신설했다(동법 제46조).

8)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에 리콜규정이 도입된 것은 수거·파기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던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이다

31) 제31조의2 (식품 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제31조의2 (위해식품 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의3³³⁾).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동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2006년 9월 27일 제명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리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9) 축산물가공처리법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폐기·회수 또는 공표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

10) 농산물품질관리법

1999년 1월 21일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생산자 등에게 폐기 등을 하게 하도록 규정했다(동법 제14조).

2001년 1월 29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적용품목이 농수산물에서 농산물로 변경되었다.

33)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11) 수산물품질관리법

2001년 1월 29일에 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허용기준 도는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생산자 등에게 폐기 등을 하게 하도록 규정했다(동법 제43조).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13) 약사법

2006년 10월 4일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약품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동법 제31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 위해의약품등의 회수(동법 제39조), 폐기명령 등(동법 제17조),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동법 제72조) 등이다.

14) 식품안전기본법

2008년 6월 13일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19조).

(3) 리콜법령연혁의 문제점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입법체계는 품목별로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리콜법령연혁도 전체적인 관점보다는 개별입법의 필요에 의해 변해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신인 공산품품질관리법(1973년)을 시작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983년), 대기환경보전법(1990년), 자동차관리법(1991년), 식품위생법(1995년),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1995년), 축산물가공처리법(1997년),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년), 약사법(2006년), 식품안전기본법(2008년) 등이라는 개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리콜법제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정책이 미흡하여 리콜법제에 관한 소관부처별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리콜규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리콜법제와 공산품리콜법제는 같은 부처의 소관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리콜규제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규제의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2. 체계적합성 분석³⁴⁾

(1) 체계적합성 분석의 의의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리콜법제간의 체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규범론적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리콜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 사이의 체계성을 밝히고 이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이다. 특히 리콜에 관한 특별법의 난립은 규제의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리콜법제에 대하여 그 체계적합성의 검토는 규제와 행정 목적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법령의 체계적합성이란 법령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다. 이는 법령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적합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적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합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적합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34) 체계적합성 분석에 대해서는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7쪽 이하 참조.

법령내의 체계적합성 내지 법령간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체계내적 적합성

1) 규정형태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명령에 수권하거나 정부에 수권할 때 그 법률의 수권규정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들이다.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복잡다기하고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대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적응성의 부여라는 또 다른 공익적 용구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어디서 찾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이른바 규율 밀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①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은 법의 형식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명확성은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필수적인 보완이자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이 규율하는 내용의 의미가 광범하고 막연하여 법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리콜법제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리콜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고의무나 사고통보의무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고나 통보하고 보고나 통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나 통보의 내용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보고의무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물발견보고의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사고통보의무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② 포괄적 위임의 금지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헌법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의 금지는 위임입법의 영역에서 하위법규범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에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범류에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칙은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리콜법제에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은 강제적 리콜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리콜법제에서 강제적 리콜절차는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 요구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 리콜법제에서는 강제적 리콜절차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 제18조 제2항),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도 유사하게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③ 중요사항 유보

법률유보에 대한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에만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작용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요구도 높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급부행정과 같은 부문에서도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명령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리콜법제에서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은 자발적 리콜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리콜법제에서 자발적 리콜절차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리콜법제에서는 자발적 리콜절차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1개 조문으로 두고(동법 제45조 제1항), 회수대상 식품 등, 회수계획, 회수절차, 회수결과보고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45조 제3항). 그리고 약사법에서도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1개 조문으로 두고(동법 제39조 제1항), 위해성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계획 또는 회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3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2)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위입법에서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수권기관의 행위의 내용이나 하위명령의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리콜법제에서 명령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가능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둘째, 규율대상, 내용, 기준 등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며, 셋째, 입법취지나 하위법령의 입법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덧붙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계외적 적합성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리콜법제중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그 법령과 다른 법령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식품안전기본법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더 나아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그러나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상 리콜규정은 소비자안전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런 규정과 같이 수평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려는 의미로는 실제 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이에 관련 법령간의 수직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도록 타법률과의 관계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의의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별 개별입법주의로서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리콜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리콜에 관한 개별입법주의는 리콜에 관한 수범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리콜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콜법제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품목별로 달리 규율하는 법률을 찾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원리나 기준이 다를 경우 규범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제 규제의 대상자인 수범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리콜법제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규제의 목적이 현실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2. 수범자의 실태조사

이하에서는 이미 실시된 1997년의 실태조사와 2006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범자의 실태조사를 파악한다.

(1) 1997년 실태조사³⁵⁾

이 설문조사 중 리콜법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은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에 관한 것으로 리콜용어, 기업의 리콜제도 시

35) 1999년 설문조사는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 리콜제도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심영·이혜임,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와 소비자정보 및 교육의 필요성”, 『소비자학연구』 제10권 제2호(1999년 6월), 93쪽 이하 참조.

행여부, 리콜제도, 리콜대상제품, 리콜제도의 목적, 리콜제도의 활성화, 리콜제도실시 기업의 이미지, 실제구매의향, 신제품추천의향, 리콜의향, 대처방향, 리콜대상의 처리요구유형, 리콜경험, 리콜조치후의 만족도 등을 파악했다.

첫째,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와 관련하여 리콜이라는 용어를 들어본적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81%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콜제도시행에 대해서도 약 60%가 조금 알거나 알고 있었지만, 약 30% 정도는 잘 모르거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이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리·교체나 환불까지 약속하며, 앞으로 더 나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겠다는 리콜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55%가 매우 긍정적으로, 약 34%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남용, 원료 위해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획득, 안전기준의 미준수 등으로 사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하는 제품인 리콜대상 제품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33%가 불량품으로, 약 43.7%가 불량품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결함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위해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빨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품의 품질문제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위한 것이라는 리콜제도의 목적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66%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 소비자들이 매우 그러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약 35%가 대체로 그렇다고 하였다.

셋째, 리콜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소비자인지와 관련하여 현재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81%가

긍정적인 이미지, 약 4%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였다면 그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37%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면, 약 57%가 상황에 따라 약 9%정도가 구매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콜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참여의지와 관련하여 구입한 제품이 리콜대상 제품이라면 리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약 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형태로 리콜처리를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의 25%가 원하는 대로라 하여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교환(23.4%), 환불(17%), 무상수리와 신제품 교환(각각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변사람들이 리콜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46%가 모른다, 약 26%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리콜용어 자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리콜제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리콜제도에 대한 개념, 목적, 활성화 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콜대상제품을 불량품으로 이해하는 소비자도 다소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자발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성향과 기업과 소비자간의 불신 성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2) 2006년 실태조사³⁶⁾

이 설문조사는 소비재 리콜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인식과, 실제 리콜 이행실태에 대한 것으로 리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에 대해 리콜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자발적 리콜 활성화의 제약 요인,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리콜 회수율을 제고를 위한 리콜 통보방법 등을 조사했다.

첫째, 현행 리콜제도에 대한 인지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31.3%이며, ‘조금 알고 있다는 경우’가 전체 64개 응답기업의 6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잘 모르고 있다는 경우’는 4개 기업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한 기업을 한 곳도 없었다.

둘째,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지수준과 관련하여 제품에서 안전과 관련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정부(시·도 지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42.2%인 27개 기업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8.1%인 18개 기업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기업도 전체의 29.7%인 19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의 결함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수임을 인정할 때, 이와 같이 강제적 제도가 제대로 지

36) 이 실태조사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화학·전자제품 등 일반 공산품과 식품류의 생산을 담당하는 1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리콜제도 전반 및 이행절차 등에 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리콜의 활성화와 리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각 업체의 리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9개 업종의 64개 기업이 답변에 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인,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정책연구 06-16,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80쪽 이하 참조.

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49.3%인 총 35개의 응답 기업이 ‘원치 않는 리콜로 이어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제도나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9개(26.8%) 기업이었다. 한편, ‘보고할 결함정보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1곳이나 되었다.

셋째, 자발적 리콜 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업이 리콜을 꺼리는 주된 요인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56.3%인 49개 기업이 (만일 자사 제품의 리콜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훼손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19.5%인 17개 기업은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기업들은 여전히 리콜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는 데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리콜에 따른 비용부담(12개, 13.8%)과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7개, 8.0%)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도 기업들이 자발적 리콜을 꺼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기업의 대부분인 81.2%가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전환을 시급히 요망하고 있는 기업 측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응답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기업 내 의사결정자들의 리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리콜통보방법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련하여 현행 관계법령상에는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고지하는 리콜 통보방법으로 개별 우편통보와 신문 광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상의 리콜통

보방법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5.6%인 10개 기업이 ‘매우 효과적’이며, 40개 기업(62.5%)이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상의 리콜 통보방법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통보방법을 제안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응답 기업들이 대중매체(TV/라디오, 신문)를 제시하였으며,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 등 유·무선의 개별통보를 제시한 경우도 25.0%가 되었다.

다섯째, 기업의 리콜절차와 관련하여 리콜업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업 내부절차(업무 매뉴얼, 내부규정 등)를 따로 구비해 놓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의 78.1%인 50개 기업이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리콜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기업(14개, 21.9%)도 상당부분 있는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리콜결정시 제품회수나 수리, 교환, 환불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 가운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 내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즉 전체 응답기업의 76.6%인 49개 기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위의 설문(리콜업무를 위한 내부절차 마련 여부)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리콜업무를 위한 기업내부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단기준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한편 리콜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회수·시정조치 등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행정기관·절차 등에 대해 업무담당자로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은 결과, 대부분의 리콜실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실시 과정에서 리콜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지정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모두 리콜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사결과의 분석

1997년 실태조사와 2006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현행의 리콜법제는 수범자에게 있어서 수용성이 떨어지고, 정보제공의 기능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997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2006년 실태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1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콜제도에 대한 수범자(기업과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리콜법제가 수범자의 관점에서 제도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리콜법제의 공평성이나 효율성, 나아가 리콜법제의 실효성 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된다.

위의 두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현행 리콜법제의 적용범위나 입법체계의 형태에 대해 수범자인 소비자와 기업이 인식하는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재해 있는 리콜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3 절 비교법적 분석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리콜법제 별로 보면 EU, 미국, 일본 등의 개별법률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다. 이에 선진국가의 리콜법제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면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입법체계는 물론 리콜규제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전가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EU, 미국, 일본 등의 리콜법제와 관련된 소비자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입법론적 동향을 파악한다.

1. E U

EU는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두고 있지만, 서비스안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 그러나 운송·관광 등 개별소비자보호지침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제품안전지침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 이래 유럽통합의 목적은 유럽내부에서 국경없이 물품, 인력, 용역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이다. 그러나 회원국간 법률의 규율내용차이는 회원국간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은 내부시장의 공고화(consolidation)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내부시장에서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의 통합 내지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소비자정책 및 법 분야이다.

이미 소비자정책 및 법 분야에서 내부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시정할 목적으로 지침, 규칙 등을 채택하여 왔고, 제품안전분야에서도 일반제품안전지침, 완구지침, 화장품지침 등 다양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제정된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87/357/EEC)이 2001년 개정되면서(2001/95/EC) EU제품안전규제의 내용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규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2001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³⁷⁾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은 1999년 지침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

37)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 OJ L11, 15.1.2002, p.4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2/l_011/l_01120020115en00040017.pdf>

다. 2002년 지침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품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지침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product)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적용된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헤어드라이어, 건강센터에서 사용되는 운동기구, 유통시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리프트 등은 명확하게 적용범위이고,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활용품도 적용범위이다. 그러나 골동품이나 공급자가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사용되기 전에 수리되고 재활용된 제품은 제외된다.

둘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 구체화이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일반적 의무로서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의무로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쌍방에 대해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와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품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와 자사의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리콜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위험회피에 협력할 의무와 특히 제품의 유통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의 보관·제공의무를 규정하였다.

셋째, 관할행정기관의 권한 강화이다. 회원국의 관할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권한, 위험한 제품에 대해 즉시 경고를 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할 권한, 리콜 및 제품폐기의 명령권한 등을 인정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리콜 및 제품폐기를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할행정기관은 자율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가 이

행되도록 지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영 국

영국의 소비자안전법제는 소비자보호법과 일반제품안전규칙이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영국에서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일반법규를 소비자보호법 제2장(소비자안전)에 두고 있다. 동법 제2장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일반법규 체계에 갖추고 있다.

1987년 이전에는 영국에서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소비자안전법(1978, 1986년 개정)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1978년 소비자안전법에 근거한 소비자안전규칙은 20여개가 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상품의 안전백서(1984)에 포함된 제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 후 1987년에는 동 안전법의 내용을 제조물책임법 등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에 통합하여 입법하였다. 1987년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7)에서는 제1장 제조물책임에 이어서 제2장 소비자안전에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자의 일반안전요건 준수 의무이다. 영국의 소비자보호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안전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형사제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도입한 규정이다. 제10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만큼 안전에 적합한 소비자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제품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961년 소비자보호법, 1972년 EC법 그리고 1978년의 소비자안전법에 안전규정을 마련하거나 EC 의무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수한 범위의 제품만 다루어 왔고, 이러한 법들은 제품의 판매자 또

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법적 수단에만 치중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상품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고용주에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히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품의 디자이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도 최소한 제품을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동 조항을 입법하였는 바, 그 특징은 일반안전요건공급이다. 이 요건은 동조 제7항에서 제외시킨 소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입법당시 수준에서 2000프랑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제품이 일반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요건이란 유럽 또는 기타 어느 지역에서나 요구되는 안전요건에 충분히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에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소비자제품이란 사적인 이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경작농작물 또는 토지에 부착된 기타 물건, ② 물, 음식, 사료 또는 비료, ③ 1986년 가스법에 의하여 공급을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여야 할 또는 공급한 가스, ④ 항공기(행글라이더는 제외) 또는 자동차, ⑤ 통제되는 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 ⑥ 담배

둘째, 안전규칙(Safety regulations) 제도이다. 소비자제품안전 규칙제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소비자보호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1978년 소비자안전법에서 권한이 확대된 것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국무장관은 제10조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일정한 사항의 보장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을 규칙으로 둘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국무장관이 안전규칙의 제정을 제안함에는 안전규칙제정전까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그러한 제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 이익을 가지는 단체에게 자문할 의무 ②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문할 의무 ③ 작업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규칙인 경우에는 보건 안전위원회에 자문할 의무.

셋째, 국무성의 금지통지와 경고통지이다. 국무장관은 소비자안전을 위한 행정규제권한으로 일정한 경우에 금지 또는 경고 통지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3조). 국무장관은 불안전하다고 판단한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의 제의 및 동의, 공급을 위한 소유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금지통지(Prohibition notices)를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불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에 관한 경고를 경고통지에서 정하여진 형식과 방법 등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표하도록 경고통지(notices to warn)를 발할 수 있다.

넷째, 중지통고(Suspension notices)이다. 집행당국은 어떠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국의 허가없이 그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통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그러나 중지통고를 발한 집행당국은 다음의 경우 그 중지통고로 인한 모든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① 그 제품과 관련하여 안전조항의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② 권한의 행사가 그 사람의 불이행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중지통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일정한 기간내에 통고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취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이다. 국무장관이 ① 어떠한 안전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거나 ② 금지통지를 발부, 변경,

폐지하거나 ③ 경고통지를 발부, 폐지할 것을 결정할 목적에서 어떤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8조). 이러한 통지에서는 ①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국무장관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통지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작성하고, 국무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① 합리적 이유없이 이 조항에 의한 통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② 국무장관이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물질적인 특성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알리거나 그러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알리는 경우에 그 위반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2)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

영국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의 내용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1994년 일반제품안전규칙(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1994(SI 1994/2328))을 개정하고,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³⁸⁾의 내용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과 유사하다.

첫째, 적용대상인 제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2조). 중고품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된 제품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관할행정기관,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수리나 재활용을 위해 공급되는 중고품은 적용대상이 제외된다(동규칙 제4조).

둘째, 제조업자가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의무가 있고(동규칙 제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전표준에 따른 제품은 안전한 것

38)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2005(Statutory Instrument 2005 No. 1803), <<http://www.opsi.gov.uk/si/si2005/20051803.html>>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6조).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와 유통된 자사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감시할 의무가 있고(동규칙 제7조), 판매업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진다(동규칙 제8조). 한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유통된 제품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동규칙 제9조). 이 규정은 골동품이나 수리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관할행정기관에게는 규칙을 집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10조).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의 상시적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표준부서(the trading standards departments of local authorities)가 담당한다. 관할행정기관은 내용에 따라 의심통지(suspension notices), 표시명령(requirements to mark), 경고명령(requirement to warn), 공급금지통지(withdrawal notices), 회수통지(recall notices) 등 다양한 안전성통지(safety notices)를 행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조~제15조).

넷째, 관할행정기관은 시험구매, 제품의 검사, 압수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동규칙 제21조~제23조).

(3) 독일

독일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의 내용에 따라 2004년 1월 9일 ‘소비자제품 및 산업용기기의 안전규정 재편성에 관한 법’³⁹⁾의 제정에 따라 기기·제품안전법(Geräte- und Produktsicherheitsgesetz)이 제정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 기기·제품안전법은 기존의 기기안전법(GSG)의 핵심 부분(산업용 기술기기 및 일용품)과 제품안전법(ProdSG)을 통합한 법률로서

39) Gesetz zur Neuordnung der Sicherheit von technischen Arbeitsmitteln und Verbraucherprodukten vom 6. Januar 2004(BGBIIS.2) <<http://217.160.60.235/BGBL/bgb11f/bgb1104s0002.pdf>>

적용법률이 없는 제품은 물론 소비자제품의 특별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로 기기안전법과 제품안전법이 존재하므로 발생했던 규정 중복, 관할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

독일 2005년 기기·제품안전법의 내용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과 유사하다.

첫째, 기기·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은 산업용기술기기, 소비자제품, 감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 등이다. 산업용기술기기란 근로작업용 장치·설비로서 정한 용도가 근로작업장에서의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소비자제품은 일용품 또는 소비자용 제품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리고 감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는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이다. 그리고 제품은 신제품, 중고품, 재활용품 또는 현저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 자의 안전 및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인정된다.

둘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제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 상세한 소재지, 제품형식명을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조업자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상세하게 감시하고,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GS마크를 첨부할 수 없었던 제품인 가구, 비품, 베이비용품,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GS마크첨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스웨덴

스웨덴은 2001년 EU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따라 1988년 제품안전법(1998:1604)을 폐지하고 2004년 제품안전법(Produktsäkerhetslag)(2004:451)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독일, 영국 등 다른 회원

국과 달리 제품은 물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자와 동일하게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7조 이하). 그 밖에도 안전정보제공의무(동법 제 13조), 경고정보제공의무(동법 제14조), 리콜(동법 제15조 이하), 위해방지수단 및 협력체계(동법 제20조 이하), 통지의무(동법 제23조), 감독기관(동법 제24조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핀란드

핀란드는 2001년 EU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따라 1986년 제품안전법(914/1986)을 폐지하고 2004년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75/2004)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독일, 영국 등 다른 회원국과 달리 제품은 물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자와 동일하게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하). 그 밖에도 적합성평가의 기준(동법 제7조), 제품안전감시기관(동법 제8조 이하),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무(동법 제13조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부 조항(동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미 국

미국 연방의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972년 10월 27일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

fety Act)을 제정하였다(U.S.C. 2051-2084). 그 후 1990년 11월 16일 동법은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비자문제가 정책대상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여러 법률로 이에 대처하여 왔다.

1972년 입법당시 연방의회는 다음의 현실을 입법배경으로 삼았다. ① 부당한 위협을 안고 있는 소비자제품이 상거래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② 소비자제품의 복잡성 및 소비자의 다양한 성질과 능력에 비추어 소비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능력이 불충분하다. ③ 일반국민은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협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 ④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협에 대한 주와 지방정부에 의한 관리는 불충분하고, 또한 제조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⑤ 위험한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연방정부기관은 불충분하다. ⑥ 판매 또는 사용이 주와 주사이 또는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제품의 규칙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소비자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 37 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체계내에서 법의 입법적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CPSC의 기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정보제공, 안전기준, 신제품, 검사, 수입품, 수출품, 민사벌, 형사벌,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의 내용이 충실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소비자제품안전법의 목적은 동법 제2조(b)에 ①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협에 대하여 대중을 보호, ②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비자원조, ③ 소비자제품에 대한 통일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주 및 지방의 규제저축을 최소화, ④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망·질병 및 위해원인의 연구 조사와 사망 질병 및 위해의 예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적용범위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a)에서 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소비자제품은 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이나 거소, 학교, 레크리에이션 장소 또는 그 외 곳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혹은 ②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이나 거소, 학교, 레크리에이션 또는 그외의 곳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 소비 또는 향유를 위하여 생산 또는 유통된 모든 물품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제품안전법은 다음을 소비자제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①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 ② 담배 또는 담배제품, ③ 1966년 연방 운수자동차안전법상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비, ④ 연방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쥐약법상 살충제, ⑤ 제조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하여 판매된다면 1954년 세입법 제 4181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물품, 또는 그와 같은 부품의 구성부분, ⑥ 1958년 연방 항공법상의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기구, ⑦ 1971년 보트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보트, ⑧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상 약품, 설비, 화장품, ⑨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상의 식품, ⑩ 가금제품검사법상의 육·육식품제품, ⑪ 난제품검사법상의 난 및 난제품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제품안전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8조). ① 제품이 미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것(또는 이 제품이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이 소비자제품이 실제로 미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에 공급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비자제품이 거래에서 공급될 때 그 소비자제품의 용기에 수출된다는 것을 기재한 스탬프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을 때, 다만 이 법은 미국외에 소재하는 미국의 시설에 판매를 위하여 제조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출하되기 위하여 판매된 모든 소비자제품에 적용된다.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독립행정규제위원회로 설립되었다(동법 제 4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이며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원은 3인 이상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① 소비자제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어떤 공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② 소비자제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의 주식 또는 사채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자, ③ 기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자와 금전적 이익을 가진 자, ④ 영업,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973년 5월 14일 구성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다음 5개 법률을 집행한다. ① 소비자제품안전법, ② 가연성직물법, ③ 연방위험물질규제법, ④ 1970년의 독극물예방포장법, ⑤ 1956년의 냉동장치안전법 등이다. 위원회는 주요사무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업무집행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반적 정책 또는 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규제적 결정, 인정 및 결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사, 법률고문실장, 공학과학부장, 그리고 정보 및 대민

국장을 임명하여야 한다(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조직규정은 CPSC 세부규칙 1000.1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위원회와 통화할 수 있는 무료 직통전화를 운영한다. 또한 청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들이 위원회와 통신할 수 있는 무료 텔레타이프를 운영한다(CPSC 세부규칙 1000.3).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위원회에 문서에 의하여 법령이나 규제의 공포, 개정,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CPSC 세부규칙 1000.5).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주요업무로는 제품안전정보업무, 소비자제품안전기준 제정업무, 소비자제품안전안전규칙의 신청에 대한 처리업무, 금지된 위험제품 지정업무, 급박한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업무, 신제품에 대한 업무 등이 있다.

(4) 안전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이 경우 법원의 직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관 및 법률고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된 절차의 기록을 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 또는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국 최고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링 의무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거 소비자제품안전기준의 적용을 받고 또한 거래에서 유통된 제품의 제조자는 모두 이 제품에 적용될 모든 소비

자제품안전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이 증명서는 당해제품에 붙이든가 또는 이것을 해당 제품의 인도를 받은 모든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모든 각 제품의 시험 또는 적정한 시험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또한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제품안전기준의 적용을 받고 또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정보를 언급한 라벨의 사용을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형식 및 내용도 정할 수 있다. ①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② 소비자제품의 표시 ③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모든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합치하는 사항의 증명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의 명세 등이다.

(6) 통보 및 수리, 교환, 환급 등 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거래에서 공급된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또한 그 제품의 공급자 및 소매업자로 그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실질적인 제품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취득한 자는 모두 그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항 또는 그 결함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가 그 결함 또는 그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적절히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제품위험으로부터 대중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조치를 일정한 형식 및 내용을 명시하여 취할 수 있다. ① 결함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대중에게 공고명령, ②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 각각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하는 명령, ③ 통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하는 명령 그리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실질적인 제품의 위험을 만들어 내고 또한 이 항에 의거한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제품을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요건에 합치시키고 그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는 것, ② 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적합한 또는 결함이 없는 유사 동등한 제품과 교환하는 것, ③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는 것 등이다.

(7) 검사 및 기록작성

소비자제품안전법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또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지명한 행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16조). ① 소비자제품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공장, 창고 또는 시설과 운송기관에 대한 검사, ② 제품의 제조, 보관 수송상태와 그 제품의 안전과 관련있는 운송기관, 공장, 창고 또는 시설의 검사 등이다. 이러한 권한 수행에는 위원회의 신임장과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는 신속히 개시하고 처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전용라벨업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규칙 또는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요구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를 완성하며 그리고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지명한 행정관 또는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조자, 전용라벨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제품안전법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규칙에 따라 행위를 하였거나 행위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관계되는 장부기록 및 서류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8) 수입제품에 관한 규제

미국 관세영역에 수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반입이 거절된다(동법 제17조). ① 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 ② 동법 제14조에 근거한 제품증명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동법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소비자제품으로 결정된 것, ④ 실질적으로 제품의 위험(동법 제15조(1)(2)의 의미에서)이 있는 결함제품인 것, 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재무장관에게 동조(g)에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한 자가 제조한 제품인 것 등이다. 재무부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제품의 샘플의 적정한 수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위원회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미국의 관세영역에서 반입이 거절된 제품은 반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장은 그 제품의 폐기를 허가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그 제품을 적정한 시간 내에 반송하지 않을 때에는 재무부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정하는 폐기에 관련한 모든 비용 그리고 반입이 거절된 소비자제품의 저장, 하차, 운송 또는 노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부담을 태만히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장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취특권이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소비자제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법률에 의한 검사와 기록작성의 요건 그리고 이 요건에 관한 소비

자제품안전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9) 금지된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9조). ① 소비자 제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소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시장에 공급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② 금지된 위험제품이라고 선언된 소비자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통상에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③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하여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행위 또는 이를 거절하는 행위, ④ 동법 제15조(b)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동법 제15조(c) 또는 (d)에 의한 명령(통고, 수리, 교환 및 환불)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⑥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요구한 증명서를 주지 않는 행위 또는 허위증명서를 발행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14조(c)에 의한 라벨부착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위, ⑦ 동법 제9조 (d)(2)에 의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다만 ① 및 ②는 ① 해당 소비자제품이 모든 안전규칙에 따르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동법 제14조(a)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자(그 사람이 소비자제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때에는 제외함), ②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표시를 선의로 신뢰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0) 법원의 역할, 손해배상소송 등

미국 지방법원은 동법 제19조의 위반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제품안전규칙에 따르지 않는 제품의 시장공급을 중지시키거나 양 조치를 모두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위한 소제기관은 위원회(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와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반되는

행위, 부작위 또는 거래가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피고가 소재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다.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그 외의 규칙 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발하는 명령을 고의로(의식적인 것을 포함) 위반함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고의로(의식적인 것을 포함)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거나 소재 또는 대리인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피해의 배상 및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소송대리인의 적절한 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23조).

이해관계인은 제품안전규칙 또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강행시키고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소재하거나 영업을 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30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위원회, 법무장관 및 소송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규칙 또는 명령의 위반사실, 요구하는 구제 및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될 때 동일 위반사항으로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민사 또는 미국 형사소송에 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누구든지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 또는 명령에 따랐더라도 그 자의 관습법 또는 주의 제정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일 본

소비자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일본의 리콜 관련 법제로는 액화석유가스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함으로써 액화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액화석유가스거래의 적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법,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더불어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가스사업의 운영을 조정함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가스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관리, 가스용품의 제작 및 판매를 규제함에 따라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공해의 방지도모하기 위한 가스사업법,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의 구입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적절한 표시를 요청하여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용품품질표시법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최근에 제정된 소비자안전법을 살펴본다.

(1)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은 그 이념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른 법률은 특정분야의 필요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입법된 것에 대하여 이 법률은 소비물자나 소비용품의 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혁신의 진전이 따랐다. 복잡 또는 고성능인 소비생활용품이 점차 개발되고 국민의 풍요로운 소비생활의 향수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반면 소비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고 이러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나 고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책의 강화에 더하여, 기존법에 의한 안전규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하여도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로써 각종의 소비생활용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으로서 1973년 6월 6일에 제정 공포된 법률(최종개정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이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이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제(특정제품의 지정 등) 및 민간의 자주적 노력 촉진(제품안전협회의 설립)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제이다.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특히 안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특정 제품으로서 차례로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기준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표시가 부착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사사무에 대하여는 국가검정기관 외에 제품안전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제품안전협회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수출검사기관 등 민간의 검사기관의 협력을 얻고서,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간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안전성 확보, 향상대책의 촉진이다. 많은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가 민간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리고, 총력을 기울여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이고, 민간의 자각과 자주적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법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안전성 확보, 향상대책을 촉진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인가법인인 제품안전협회

가 설립되었다. 협회는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19인이 발기인으로 되고, 당시 통상산업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업무로서는 국가의 특정제품에 관한 검정 등의 사무,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의 인정 및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사무를 행하는 외에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조사, 지도 및 정보의 제공을 행한다.

셋째, 긴급한 경우에 대한 조치이다. 일반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은 제품에 대하여는 본래 특정제품으로서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본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제품으로 하는 것으로는 안전기준의 작성, 심의회의 자문 등으로 약간의 시간을 요하므로, 그 사이의 사고발생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고가 빈발할 우려가 높고, 그 확대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진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판매정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소비생활용품안전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생활용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②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2) 법의 적용범위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 소비생활용품이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다만 ①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②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 첨가물 및 세제, ③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용 기계 기구, ④ 독극물단속법에 규정한 독물 및 극물, ⑤ 도로운송차량법에 규정한 도로운송차량, ⑥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⑦ 무기등제조법에 규정한 업총 등, ⑧ 약사법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⑨ 기타 위해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소비자 제품이 아니다(동법 별표).

3) 특정제품에 대한 규제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 특정제품이란 소비생활용품 가운데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끼칠 염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특정제품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유아용 침대, 등산용 밧줄,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육조용 온수 순환기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1).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안전성의 확보가 행하여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법에서는 특정제품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다.

4) 위해방지명령

주무장관은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다만, ① 해당 위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판매한 특정제품의 회수를 위

한 것일 것, ③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행하는 자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특정제품을 판매한 것일 것, ④ 신고 사업자가 그 신고에 관계된 형식의 특정제품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조하고, 수입하고 또는 판매한 것을 갖춘 경우에 위해방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 장관은 소비생활용 제품의 결함에 의해, 중대 제품 사고가 생긴 경우 그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또는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정령으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행한 자에 대해,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된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회수를 도모한 것 그 밖에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2) 소비자안전법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생활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등을 통한 소비생활상담의 실시, 소비자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결과공표,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⁴⁰⁾ 소비자안전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단행법으로써 이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 의의가 크다. 물론 소비자안전을 위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

40) 일본의 소비자안전법에 대해서는 고희석, “일본 소비자안전법”, 『법제』, 2009년 7월호, 14쪽 이하 참조.

지만, 해당 법률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서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행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법제화한 것이 소비자안전법이다.

1) 목적과 정의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방지하고, 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 및 市町村)에 소비생활상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및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의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가 안심·안전 및 풍요롭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안전법에서 ‘소비안전성’은 상품 등(사업자가 사업으로써 공급하는 상품 또는 제품,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제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사업으로써 또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사용되는 물품,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사업자가 사업으로써 또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특성, 이로부터 통상 예견되는 사용(음식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의 형태 기타 상품 등 또는 역무와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사용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말한다.

2) 기본이념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소비자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사고등의 발생 내지 소비자사고등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또한 동 시책의 추진은 사업자의 적정한 사업활동을 배려하고 소비자수요의 고양, 고도화 내지 다양화 기타 사회경제사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소비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 시책의 추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연대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안전법에서 리콜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은 소비자사고 등에 발생에 관한 정보의 통지(동법 제12조)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제13조)이다.

첫째,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장은 중대사고등이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 직접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취지 및 해당 중대사고등의 개요 기타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⁴¹⁾을 통지하여야 한다.⁴²⁾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장은 중대사고를 제외하고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지득한 경우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태양, 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해당 소비자사고등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거나 해당 소비자사고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소비자

41)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지득한 일시 및 방법, 중대사고등의 태양, 이의 원인이 되는 상품 등 또는 용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지 피해의 상황(피해가 발생한 중대사고등에 한함)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2항).

42) 통지는 전화, 팩스 기타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사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한 취지 및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개요 기타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⁴³⁾을 통지한다.⁴⁴⁾

전 2항의 규정은 이의 통지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다음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발생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⁴⁵⁾, 둘째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소비자사고등의 발생에 관련된 통지를 하여야 하는 다른 자로부터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자, 셋째 전 2호에서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써 정령에서 정하는 자⁴⁶⁾가 이에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장이 동 규정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해당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한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각부령이 정하는 요건⁴⁷⁾을 충족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43)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지득한 일시 및 방법, 중대사고등의 태양, 이의 원인이 되는 상품 등 또는 용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지 피해의 상황(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사고등에 한함),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사항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4항).

44) 통지는 전화, 팩스 기타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행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3항).

45) 행정기관의 장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및 국민생활센터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4항).

46) 행정기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에게,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국민생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5항).

47) 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 시스템(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

둘째, 내각총리대신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지득한 정보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당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의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된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관련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센터에 제공함과 더불어 소비자위원회에 보고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세계적으로 소비자안전제도로서의 리콜을 위한 입법모델은 크게 개별입법주의와 통합입법주의로 나누어진다. 개별입법주의는 품목별로 리콜법제를 입법하는 모델이다. 개별입법주의의 대표적인 입법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일본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소비생활용품), 전기용품안전법(전기용품), LP 가스보안법(액화가스석유가스기기), 가스사업법(가스용품, 가스소비기기), 도로운송차량법(자동차, 자동차장치), 식품위생법(식품, 첨가물, 세정제), 약사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유해물질 함유한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가정용품)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최근에 제정된 소비자안전법으로 인해 통합입법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입법주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리콜일반법을 입법하는 모델이다. 미국과 EU회원국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자동차와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리콜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법인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소비자제품에 관한 리콜의 일반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EU는 일반

생활센터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처리방법에 따라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국민생활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6항).

제품안전지침의 개정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리콜의 일반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국은 국내법화과정에서 리콜의 일반법으로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입법동향은 소비재의 경우에는 소비자안전법 제정을 통한 통합입법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리콜법제가 품목별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리콜에 관한 통합을 어떤 입법형식으로 정립할 것인가의 리콜법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대안과 권고

제 1 절 대안제시

1. 대안 1 :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

첫 번째 대안은 리콜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콜에 관한 기본법에서 기본개념의 정의, 리콜의 기본이념, 리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리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결함정보 보고의무, 안전성조사,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리콜권고, 리콜정보망구축 등 리콜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리콜법제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소관품목에 따라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현행 리콜법제가 모든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신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리콜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강제적 리콜을 명령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든 적용법규의 내용이 달라 수범자의 입장에서든 리콜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리콜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방식은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가칭)리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리콜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통일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고 소관부처도 강제적 리콜절차를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혼잡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현재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리콜기본법을 제정한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 국내에서는 기본법의 명칭을 갖고 있는 법률은 많다. 건강가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세기본법, 국토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자격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이중 (가칭) 리콜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참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교육기본법을 들 수 있다.

기본법의 입법대안을 채택할 경우 개별법의 리콜규제에 대한 공백은 없으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리콜법제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은 분야가 생겨날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리콜에 한정하여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리콜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및 부처별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자발적 리콜이나 강제적 리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이나 규제주체에 대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리콜에 관한 기본법의 체제를 취하면서도 품목별 개별법에서 리콜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리콜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안 2 :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

두 번째 대안은 리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리콜법제는 자동차, 식품, 공산품,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을 리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 다시 말해 결함제품의 피해자인 소비자나 리콜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에 따라 리콜법제와 리콜절차 등이 달라 실효성 있는 리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리콜

대상을 수범자인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리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리콜을 유도한다.

리콜일반법의 입법방식은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의 형식을 참조하여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리콜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관련자의 책무 이외에도 각종 절차 등에 관한 실체적 사항 및 그 실현을 위한 절차적 사항까지 자세하게 규율한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규정을 참조하여 리콜일반법에 리콜절차를 규정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생활과 관련한 물품과 용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집행주체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장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에서 리콜 관련 규정이 제품의 일반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리콜 일반법의 입법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수범자의 관점에서 리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일본의 소비자청 등과 같이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리콜규제권한을 갖도록 할 것인지 기존의 소관행정부처가 리콜규제권한을 소관품목에 대해서는 갖도록 할 것인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3. 대안 3 : 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

세 번째 대안은 리콜대상의 속성에 따라 크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영역별로 구분하여 품목별·부처별로 통합하여 리콜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품목에 대해 개별 리콜법제별로 리콜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달라 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품목영역별로 하나의 법률에서 리콜규정을 두고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면 기업은 통일적으로 리콜을 이행할 수 있다.

입법방식은 품목영역별로 1개 법률에서 리콜의 일반규정을 두고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방식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리콜의 경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별개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관리법에서 통합하여 자동차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준용한다.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준용한다.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서 준용한다. 한편 소비재에 관한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규정을 독립시켜 (가칭)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생활과 관련한 물품과 용역에 관한 리콜규정을 두어 소비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내포하도록 한다.

소비재에 대한 통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EU 등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법), 액화가스석유가스기기(LP가스보안법), 가스용품·가스소비기기(가스사업법), 자동차·자동차의 장치(도로운송차량법), 식품·첨가물·세정제(식품위생법),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약사법), 가정용품(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품목별로 다양한 리콜법제를 두고 있지만,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용품인 소비생활용품의 리콜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제정하여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의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1992년 제정된 일반제품 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87/357/EEC)이 2001년 개정되면서(2001/95/EC) EU리콜규제의 내용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규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⁴⁸⁾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이 중 스웨덴의 제품안전법과 핀란드의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법안으로는 2008년 11월 4일 국회에 제안된 ‘제품안전 기본법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부분품으로 (동법안 제3조 제1항) 소비재를 의미하나, 규제주체가 지식경제부로 소관품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산품 통합법의 성격을 갖는다. 제품안전기본법안상 리콜에 관한 규정으로는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동법안 제12조), 제품의 자진수거 등(동법안 제13조), 제품의 수건 등의 권고 등(동법안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형 입법대안을 채택할 경우 품목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품목에 따라 규제주체가 다른 자동차, 식품 등의 경우에는 통합법률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 2 절 대안 비교와 권고

입법평가의 기준은 다양한 관점에 접근되고 있지만⁴⁹⁾, 리콜법제의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 비용, 적용적합성, 친숙성 등의

48)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 OJ L11, 15.1.2002, p.4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2/l_011/l_01120020115en00040017.pdf>

49) 이에 대해서는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참조.

기준을 활용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리콜에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줄일 있는가, 비용은 리콜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적 수요를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적용적합성은 리콜법제의 집행기구의 관할이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친숙성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이나 적용될 법조항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각각 초점을 둔다.

대안의 공통적 전제는 현행 리콜법제가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품목은 물론 소관부처별로도 여러 개의 법률에서 리콜요건, 리콜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 더 나아가 규제주체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의 3가지 대안은 이런 리콜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3가지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안1(리콜 기본법 제정방안)의 경우 기본법을 토대로 많은 개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입법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야가 생겨날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효율성). 기본법을 제정하는 외에도 개별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점에서 그에 소요되는 입법 비용이 크다(비용). 단일의 리콜집행기구를 둘 경우 리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증대하나, 개별집행기구를 인정할 경우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어렵다(적용적합성). 기본법 이외에 품목별 통합법이 존재할 경우 수범자로서는 리콜기본법에 대한 인식도나 적용조항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게 된다(친숙성).

대안2(리콜 일반법 제정방안)의 경우 리콜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한 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으나, 기본법과 동일하게 일반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정비용이 크다(비용). 모든 리콜을 통할하는 하나의 집행기구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나, 규제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친숙성).

대안3(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의 경우 리콜대상의 속성에 따라 크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영역별로 구분하여 품목별·부처별로 통합하여 리콜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품목별로는 리콜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므로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품목별로는 한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부처별로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다(비용). 품목별로 리콜을 통할하는 하나의 집행기구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 품목별 리콜법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친숙성).

대안으로 제시한 입법체계적 특성을 법적 보호의 공백(효율성), 법 제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비용), 법집행과정의 용이성(적용적합성), 수험자의 이행가능성(친숙성) 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1] 각 대안의 비교

구 분	효율성	비 용	적용적합성	친숙성
	법적의 공백 해소	법제정비 소요비용	집행기구의 관할적합성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리콜기본법 제정방안	×	×	△	×
리콜일반법 제정방안	○	△	○	△
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	◎	○	◎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위의 3가지 대안중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리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대안 3(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이다. 대안 3은 소비자안전정책의 관점에서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입법방식이다.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통합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EU 등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용품인 소비생활용품의 리콜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제정하여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의 리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2001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2001/95/EC)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규도 개정되었는데, 이중 스웨덴의 제품안전법과 핀란드의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좋은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미국, EU 등의 국가와 같이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기본법상 리콜규정을 편입하여 소비재의 리콜에 관한 일반규정의 틀을 갖춘다면 리콜규제의 통일성은 물론 자발적 리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안전규제수단으로서의 리콜법제의 성격과 내용을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규범론적 분석, 실태조사, 비교법적 분석 등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리콜법제를 살펴본 후,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의 리콜법제를 개관하였다. 제1절에서 리콜의 개념, 종류, 방법 등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을 시작으로 자동차분야, 식품분야, 의약품분야, 공산품분야 등의 리콜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리콜법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시도했다. 제1절은 법령연혁조사, 체계적합성 분석 등 규범론적 분석을 했고, 제2절에서는 수범자실태조사를 통해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을 조명하였다. 제3절에서는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리콜관련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토대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대안들은 현행 리콜법제가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품목은 물론 소관부처별로도 여러 개의 법률에서 리콜요건, 리콜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인식에 출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안은 리콜 기본법 제정방안으로 리콜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안은 리콜 일반법 제정방안으로 리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대안은 품목별 통합법 제정방안으로 리콜대상의 속성에 따라 크게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 품목영역별로 구분하여 품목별·부처별로 통합하여 리콜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이중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소비재 리콜 통합법 제정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이 실효성 있게 결함제품의 리콜을 활성화하여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요소도 결합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사규제적 제조물책임과 행정규제적 리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유도하기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규제의 틀 안에서 자발적 리콜이나 강제적 리콜을 유도하기 보다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물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리콜후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리콜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리콜실적 등을 공개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리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의 리콜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기업·소비자의 용이한 리콜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www.recalls.gov 사이트, 호주의 www.recalls.gov.au 사이트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리콜정보 관리·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 리콜의 표준화 등 리콜제도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동향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 리콜법제의 정비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나 EU 등과의 FTA 과정에서도 수출품에 대한 리콜법제의 통일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콜법제의 입법평가가 국제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적합한 리콜법제의 정비방향을 정립해야 리콜법제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8.
- _____, “일본 소비자안전법”, 『법제』, 2009년 7월호.
- 김성천, □□서비스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 _____, “강화되는 EU의 제품안전규제동향”, 『위험관리』 통권 97호, 2005년 가을호.
- _____, □□생명공학기술의 소비자안전확보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 _____. 이준우, □□EU의 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정호, “리콜제도의 국내·외 운영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17호, 1996.
- 김현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신현호, □□경제법□□ 제2판, 법문사, 2007.
- 심 영·이혜임,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와 소비자정보 및 교육의 필요성”, 『소비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참 고 문 헌

- 이종인,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 재정경제부·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2001.
- 정종석, □□품질인증제도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8
- 정호열, □□경제법□□ 제2판, 박영사, 2008.
- 차태훈·김창수·김재우, “리콜효과: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고객충성도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68호, 2005.
- 최은희,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사후규제가 사전규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한국행정학회, “각종 표시·광고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5.
- 허경옥,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5호, 1996.

【일본문헌】

- 横内律子, 消費者政策 - 消費者保護の質的強化 -, 『調査資料』, 国立国会図書館, 2007,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document/2007/200705/143-157.pdf>]

【영미문헌】

- Weatherill, Stephen, EU Consumer Law and Policy, Edward Elgar, 2005.
- Howells, Geraint G, EC consumer law,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7.

Kendall, Vivienne, EC CONSUMER LAW, JOHN WILEY & SONS,
1994.

Schulte-Nölke, Hans and Christian Twigg-Flesner, Dr. Martin Ebers edits.,
EC Consumer Law Compendium- Comparative Analysis -, 2007,
[http://ec.europa.eu/consumers/cons_int/safe_shop/acquis/comp_analysis_en.pdf]

부
속

[부 록]

I. 리콜 관련 국내법규

1. 소비자기본법

법 령	내 용
법	<p>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령	내 용
	<p>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법 령	내 용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p>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p> <p>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법 령	내 용
	<p>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p>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법 령	내 용
	<p>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p> <p>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p> <p>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p> <p>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p> <p>제37조 (수거·과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과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p>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p>

법 령	내 용
	<p>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p>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법 령	내 용
	<p>다음 각 목의 방법</p> <p>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p> <p>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p> <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p>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p>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파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⑨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p>

2. 대기환경보전법

법 령	내 용
법	<p>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0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 (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 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

법 령	내 용
	<p>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p> <p>2. 같은 연도의 부품결합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합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p>
시행규칙	<p>제72조 (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합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p>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합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합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합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p>

법 령	내 용
	<p>고시한다.</p> <p>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p> <p>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할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할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할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할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p>

법 령	내 용
	<p>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p>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p>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p> <p>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부 록]

법 령	내 용
	<p>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p>②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p>③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2년 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1년 다.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5년 2. 제1호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3년

3. 자동차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p>

법 령	내 용
	<p>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p>②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규칙	<p>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내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p>

법 령	내 용
	<p>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

법 령	내 용
	<p>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법 령	내 용
	<p>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p> <p>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증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p>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p>

법 령	내 용
	<p>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0조의3에 따른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p>

[부 록]

법 령	내 용
	<p>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p> <p>②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p> <p>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p>②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4. 식품안전기본법

법 령	내 용
법	<p>제16조 (생산·판매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p> <p>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 (식품등의 회수) ①사업자는 생산·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p> <p>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p> <p>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p> <p>②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p>③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p>

5. 식품위생법

법 령	내 용
법	<p>제15조 (위해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p>

법 령	내 용
	<p>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p> <p>④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법 령	내 용
	<p>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p> <p>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p> <p>④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⑧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⑨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p>

법 령	내 용
	<p>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이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 (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72조 (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p>②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 4 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4.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제조·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p>②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p>③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p>

법 령	내 용
	<p>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p>④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위해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 5 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p> <p>제 7 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법 령	내 용
	<p>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p> <p>②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p> <p>③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 8 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①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p> <p>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 중 이동전화 의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의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④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p> <p>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p>

법 령	내 용
	<p>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p> <p>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p>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p>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부 록]

법 령	내 용
	<p>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p> <p>②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규칙	<p>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p> <p>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p> <p>②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p> <p>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p>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법 령	내 용
	<p>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p>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p> <p>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p> <p>③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 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p>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물질 <p>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부 록]

법 령	내 용
	<p>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p> <p>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령	내 용
법	<p>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p>

법 령	내 용
	<p>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p> <p>제30조 (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7. 축산물가공처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31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5. 삭제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회수·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7조 (공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령	내 용
시행령	<p>제26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명칭 2.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기간 및 장소 5. 회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 6.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 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p>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7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p>

법 령	내 용
	<p>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7조의2 (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p> <p>②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내에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제28조 (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p>

법 령	내 용
	<p>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 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2 (안전성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법 령	내 용
	<p>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p> <p>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22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시행규칙	<p>제15조의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7조의 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1.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p> <p>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p>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p>

법 령	내 용
	<p>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 <p>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⑪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의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p> <p>제15조의1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부 록]

법 령	내 용
	<p>사. 생산계획량</p> <p>2. 유통단계</p> <p>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p> <p>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p> <p>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p> <p>3. 판매단계</p> <p>가. 판매처 명칭</p> <p>나. 판매처 소재지</p> <p>다. 판매처 전화번호</p> <p>제15조의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 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13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꽃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p>제15조의14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p>

법 령	내 용
	<p>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1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재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9. 수산물품질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 8 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p>

법 령	내 용
	<p>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삭제</p> <p>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법 령	내 용
	<p>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 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p> <p>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p> <p>제42조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체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p>

법 령	내 용
	<p>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p>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법 령	내 용
	<p>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④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36조 (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3.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4. 안전성조사의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p>제3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안전성조사의 대상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부 록]

법 령	내 용
	<p>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p> <p>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조사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p> <p>③안전성조사방법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한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연기 조치를 한 수산물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외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8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조치 및 처리방법)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1.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한한다)</p> <p>2.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폐기</p>
시행규칙	<p>제16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①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p>

법 령	내 용
	<p>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p> <p>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p> <p>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p> <p>②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의3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p>제16조의4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①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품질검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③품질검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④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 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이력추적</p>

[부 록]

법 령	내 용
	<p>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⑤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p> <p>⑥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⑦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의5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6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푹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2와 같다.</p> <p>제16조의7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p>

법 령	내 용
	<p>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6조의8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p> <p>제16조의9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통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통업자 성명 나. 유통시설 명칭 다. 유통시설 소재지 라. 유통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판매업자 성명 나. 판매처 명칭 다. 판매처 소재지 라. 판매처 전화번호 <p>제46조 (검사기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활어패류·건제품·냉동품·염장품 등의 제품별·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p>

법 령	내 용
	<p>제69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생물질 2. 중금속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 안전성확보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물질 <p>제70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생물질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3.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p>제70조의3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이하 “수산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산정보를 생성하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산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수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정보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 3.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정보 4. 수산물 검사정보 5. 수산물 안전성조사·분석 정보

법 령	내 용
	6. 수산생물검역정보 7.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정보 ③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제공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0. 약사법

법 령	내 용
법	<p>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①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 (의약품 재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①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 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p>

법 령	내 용
	<p>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평가 기준, 회수 계획 또는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정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과 제4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5. 병원 미생물(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법 령	내 용
	<p>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p> <p>9. 용기나 포장에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p> <p>10. 용기나 포장에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p> <p>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p> <p>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p>

[부 록]

법 령	내 용
	<p>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74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개수)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p>
시행규칙	<p>제45조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①의약품등의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의약품등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등(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 한다)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의 판매나 취급</p>

법 령	내 용
	<p>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이하 “회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p> <p>②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p> <p>1. 1등급 위해성</p> <p>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p> <p>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p> <p>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p> <p>2. 2등급 위해성</p> <p>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p> <p>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p> <p>3. 3등급 위해성</p> <p>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p> <p>③회수의무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 등급이 제2항제1호에 따른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2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의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p>

법 령	내 용
	<p>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자 등의 기록 2. 제46조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3. 회수사유를 기재한 서류 <p>⑤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작성할 때 회수종료 예정일을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회수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기한을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p> <p>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제46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①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등급 위해성: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고 2. 2등급 위해성: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3. 3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의 상호,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를 게재할 수 있다.</p> <p>③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및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전달받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p>

법 령	내 용
	<p>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들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47조 (회수제품의 폐기 등) ①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환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회수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2. 별지 제40호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3.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회수종료신고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4.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 <p>제93조 (수거 등) ①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p>

[부 록]

법 령	내 용
	<p>따른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또는 물품에 대하여 봉합·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95조 (회수·폐기명령 등)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4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회수의무자에게 해당 의약품등의 회수·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p>

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28조 (안전성조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 외의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 발생시 신체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29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지식경제부장관</p>

법 령	내 용
	<p>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어린이용 공산품(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추정물질을 포함한다)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부 록]

법 령	내 용
	<p>6.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p> <p>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②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p>③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법 령	내 용
	<p>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p> <p>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한 경우</p> <p>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p> <p>④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p> <p>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p> <p>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p> <p>⑤시·도지사는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부 록]

법 령	내 용
	<p>⑥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3조 (공산품의 안전성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공산품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의 확산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공산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시정권고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5. 이행기간

법 령	내 용
	<p>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또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제17조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 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p> <p>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p> <p>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p> <p>가. 법 제3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법 령	내 용
	<p>하는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또는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산품을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려는 때에는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공산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다만,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6. 위해사실의 공표 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사실의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p>

법 령	내 용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해당공산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규칙	<p>제29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령이행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명 및 상표 3.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4.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결함의 시정내용 및 시정기간. 이 경우 결함의 시정내용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②시·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공산품의 결함을 바로잡는 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15조의2 (안전성조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밖의 전기용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 발생 시 신체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법 령	내 용
	<p>조치가 필요한 경우</p> <p>4.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15조의3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령	내 용
	<p>②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p>③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p>④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p>

[부 록]

법 령	내 용
	<p>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p> <p>⑤제4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p>제 5 조 (안전성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해당 전기용품을 수입·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이하 “수입·판매·대여업자”라 한다)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해당 전기용품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위해) 확산의 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기용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대여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학계,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p> <p>제 6 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판매금지·대여금지·개선·수거(수거) 또</p>

법 령	내 용
	<p>는 파기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기용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제조업자명 2. 해당 전기용품의 로트 번호(Lot Number)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시정권고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제 8 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p>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법 령	내 용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9 조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국·공립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상호, 로트 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 이행 책임자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공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p>

법 령	내 용
	<p>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시행규칙	<p>제26조 (안전성조사) 법 제15조의2제4호에서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7조 (이행계획서 등) ①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p>②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28조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령	내 용
법	<p>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p>

[부 록]

법 령	내 용
	<p>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차, 공표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p>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시행규칙	<p>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법 령	내 용
	<p>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p> <p>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 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p> <p>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p>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령	내 용
법	<p>제21조 (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p>

법 령	내 용
	<p>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39조 (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p>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법 령	내 용
시행규칙	<p>제39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p>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부 록]

법 령	내 용
	<p>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p> <p>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56조 (사고의 통보)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p>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5에 따른다.</p> <p>③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p>